

[問] 스프링크라設備에서 아람체크밸브(ALARM CHECK VALVE)에 리타딩 챔버(RETARDING CHAMBER)가 없는 것이 있는데 리타딩 챔버가 없어도設備의機能에 있어서支障이 없는지 또는 있어야 한다면 왜 필요한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答] 아람체크밸브는 스프링크라設備의 流水警報裝置로서 이것에 리타딩 챔버를 부착하는目的是警報의信賴度를 높이며警報裝置의保護를爲한安全裝置의 역할을 하기위한 것입니다. 리타딩 챔버의 역할을 說明하면 우선 순간적으로增減되는壓力을整化시키고 또한 순간적인 워터햄머(WATER HAMMER)의 완충역할을 해서 계속적이 아닌 순간적인壓力을上부에連結되어 있는 프레셔스위치(PRESSURE SWITCH) 및 워터모터 Gong(WATER MOTOR GONG)에傳國되지 않게 하므로서誤報를 막아주고漏水에依한誤動作를防止하여 줍니다. 또한過度한壓力은自動으로外部로排出하여 주므로서安全밸브역할을하여配管內 및 프레셔스위치의無理한作動을防止하므로서設備를保護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스프링크라設備의維持管理上 리타딩 챔버는 꼭必要한裝置입니다.

[問] 屋内消火栓設備의 遠隔起動裝置를 自動火災探知設備와 連動되게 設置할수 있는지요 또한 이경우 起動明示表示燈은 設置할 必要가 있는지요.

[答] 屋内消火栓設備의 遠隔起動裝置로서 自動火災探知設備와는原則적으로 連動시킬 수가 없습니다. 屋内消火栓設備는 手動操作에 依한 消火設

探知設備와 서로 連動하여 使用하는 것은 困難합니다.

萬一自動火災探知設備와 可能하다고 할 경우 起動明示表示燈을 設置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할수도 있겠으나 起動明示表示燈은 加壓펌프의 起動裝置와 別途의機能이므로 起動裝置를 他方法에 依하더라도 起動明示表示燈은 別途로 設置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屋内消火栓施工方法의 간편화를 기하려는 이러한方法은 바람직한施工이 못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로 使用되는 遠隔起動裝置로서는 高架水槽를 利用하여充分한 壓力を 갖일수 있도록하는方法, 壓力탱크를 사용하여 消火栓발보의開放에 依한方法과 現在 제일 많이 使用되는 消火栓函 옆에 ON-OFF스위치를 設置하여 遠隔起動操作하는方法等이 있습니다.

起動明示表示燈은 高架水槽에 依한方法에는 必要없으며 그外 펌프에 의한 加壓裝置에 있어서 起動明示表示燈을 設置하여야 할 것입니다.

備이므로 사람의操作없이는 消火를 할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自動火災探知設備와 連動하였을 경우 自動火災探知設備는 火災時自動으로警報를發하게 되므로火災를感知후 即時 펌프는稼動될 것입니다.

그러나 消火作業은 火災感知後 어느정도의時間이 경과후 시작이 되므로 그동안에 펌프의 무리한稼動으로配管 및 펌프가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屋内消火栓設備의 安全性을 고려할 때 自動火災

金根仲

<點檢2部·次長>

[問] 本人은 화재보험에 附
保된 特殊建物의 一部를 貸借
使用하던 중 本人 從業員의 失火
로 화재가 발생하여 同建物에
相當한被害를 준 바, 建物所
有主는 多幸히 保險會社로부터
保險金을 支給받고 反而 복구
를 완료하여 本人은 안심하던
차 其後 保險會社로부터 損害
賠償請求 書翰을 接受하였읍
니다.

同損害賠償請求 근거와 重過
失에 의한 失火가 아니라도 損
害賠償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
부를 回信하여 주십시오.

(참고) : 貸貸契約書上 貸借
人의 責任으로 归着한 事由로서
財產價值를 減少시켰을 時는 其
損害全部를 賠償함. 等의 내용
이 約定되어 있음

(答) 1 이 制度는 損害保險
契約에서의 利得禁止의 原則에
서 나온 것으로서 保險事由로
인한 被保險者の 財產上의 損
害를 補償하여 준 경우에 保險
金以外에 被保險者(建物所有
主)가 다른 利益을 얻고 있을
때에 (例: 保險金도 받고, 貸
借人에게도 損害賠償을 받는
경우) 그 利益의 歸屬을 保險
者에게 돌리는 이론바 保險者
代位制度에 근거하는 것입니
다.

우리나라 商法 第681條와 第
682條는 「保險의 目的」과 「第三
者」에 대한 保險者代位를 각
각 規定하고 있니을다(火保普約)

第24條 참조).

貴下의 경우는 「第三者」에
對한 保險者代位에 의한 것입
니다.

保險者代位에 의하여 保險會
社가 取得한 權利의 限度는 保險
會社가 被保險者에 대하여
支給한 金額의 限度까지가 됩니다.
즉 保險價額의 80%를
保險에 부쳤을 경우에는 保險
會社가 取得하는 權利는 80%
만이 認定됩니다.

한 損害賠償을 請求하는 것입
니다.

그러므로 貴下는 同建物의
火災가 貴下가 責任질 수 없는
事由에 因한 것이라는 立證을
다하지 못하면 貴下로서는 반
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賠償
責任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
러나 이 경우 貴下는 同一建物
인 경우에도 貴下가 使用中인
賃借部分에 對한 損害에 대하
여야만 賠償責任이 있으며 其
外 他人이 使用中인 部分에 對
한 연소피해는 失火責任에 關한
法律의 適用을 받아 賠償責任이
없습니다. 끝으로 保險者代位
는 民法上의 代位(民法 제399조)
같은 性質로서 保險會社는 指名
債權諒渡의 對抗要件(商法 제450條)
의 節次를 밟지 않고도 貴下에
게 權利를 主張할 수 있읍
니다.

2) 失火責任에 關한 法律(法
律第607號)에 의하면 失火로
因한 違法行爲로 他人에게 損
害를 加한 者는 重大한 過失이
있을 때에 限하여 責任을 진다
고 規定하고 있으므로 重大한
過失에 의한 失火가 아니면 損
害賠償할 의무는 없읍니다.

그러나 貴下의 경우는 保險金
을 支給한 保險者가 被保險者
(建物所有主)의 權利를 代位받
고 貸借人이 貸借建物의 화재
로 連坐의무 이행 불능으로 인

金勝濟

<業務部·次長>